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5. 3. 11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도시디자인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3. 11.)

2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한 방법으로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
- 대상시설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

| 소재지 | 수량 | 세부시설 현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동 364외 68개소 | 69개 | - 신고수수료: 50매 마다 5,000원(區 세외수입) |

- 위탁기간: 2025. 6. 1 ~ 2028. 5. 31(3년간)
- 위탁사무의 내용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운영
 - 벽보 광고 신청 및 탈·부착 대행

- 지정벽보판 내·외부 광고물 정비
- 지정벽보판 유지·보수 등 관리
- 위탁금액: 없음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: 정책자문위원회(도시창조분과) 자문
 -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을 위해 민간 위탁이 바람직
 -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
 - 주민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용이
- 위탁운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“수탁기관심사위원회” 심의로 선정
- 향후계획
 - 모집공고 및 접수: 2025. 3. 24 ~ 4. 9
 -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: 2025. 4 ~ 5월
 - 위탁계약 체결: 2025. 5월 중
 - 위탁운영: 2025. 6. 1 ~ 2028. 5. 31(3년간)

4. 관계법령

- 「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~제10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.
- 관내 지정벽보판은 69개소가 설치·운영 되고 있으며, 과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, 2024년에는 보다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직영 운영되어 왔음.
- 정보통신 및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광고 트렌드의 변화로 벽보판을 이용한 광고는 감소 추세에 있고, 게시물의 신청, 탈·부착,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시설 운영의

특수성, 효율성, 경제성 등과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 고려할 때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·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향후 위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,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